

건강관리수첩 제도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확대 및 발급요건 완화

발암성물질 취급 등 건강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직업성질환 조기발견 및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발급하고 있는 건강관리수첩의 **발급대상이 확대**되고 **발급요건이 완화**되는 등 건강관리수첩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석면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석면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흉부방사선 사진 상 흉막반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난 경우 관련 전문가 심의를 거쳐 석면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되면 종사기간에 관계없이 수첩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기존에는 작업의 유해성에 따라 3개월 1년 10년의 기간 동안 종사했다는 경력 입증 필요

석면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 업무	대상 근로자
가. 석면 또는 석면방직제품을 제조하는 업무	3개월 이상 종사한 사람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1) 석면함유제품(석면방직제품은 제외한다)을 제조하는 업무 2) 석면함유제품(석면이 1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제품만 해당한다. 이하 다목에서 같다)을 절단하는 등 석면을 가공하는 업무 3) 설비 또는 건축물에 분무된 석면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4) 석면이 1퍼센트 초과하여 함유된 보온재 또는 내화피복제를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설비 또는 건축물에 포함된 석면시멘트, 석면마찰제품 또는 석면개스킷 제품 등 석면함유제품을 해체·제거 또는 보수하는 업무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나목 또는 다목 중 하나 이상의 업무에 중복하여 종사한 경우	다음의 계산식으로 산출한 숫자가 120을 초과하는 사람: (나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10+(다목의 업무에 종사한 개월 수)
마.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 (추가)	흉부방사선상 석면으로 인한 징후 (흉막반 등)가 있는 사람

종사 경력 입증 방법이 다양해졌습니다.

사업장 폐업, 일용직 등 사업주를 통한 경력 입증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하여 단계별 경력 입증 방법을 도입하였습니다.

- 1단계** 사업주가 작성한 경력증명서를 통한 경력 입증
- 2단계** 특수건강진단결과표, 건강 고용보험 가입기록, 임금명세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본인 스스로 경력 입증
- 3단계** 사업주, 본인 인증만으로 종사경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업무에 함께 종사한 동료 2명이 작성한 경력증명서를 통한 경력 입증

건강관리수첩이 카드 형태로 간소화되었습니다.

건강관리수첩이 다음과 같이 카드 형태로 새롭게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수첩 형태의 건강관리수첩은 2014년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건 강 관 리 수 첩 (카 드)

발급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물 질 명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근로자 건강관리수첩을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주 의 사 항

1. 이 수첩(카드)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라 발급한 건강관리수첩입니다.
2. 이 수첩(카드)을 소지하신 분은 매년 1회 정기적으로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수첩(카드)은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으며, 수첩(카드)의 기재내용은 사실과 달리 수정·변경·날조하여서는 안됩니다.
4. 이 수첩(카드)은 여러분의 건강관리를 위한 귀중한 자료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 시 증명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소중히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수첩(카드)을 분실하거나 손상된 경우에는 수첩(카드)을 발급받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www.kosha.or.kr)

수첩소지자 건강진단이 좀 더 수월해졌습니다.

건강진단을 받을 때 카드 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제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첩을 제출하지 않더라도 건강진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수첩 신청이 인터넷으로도 가능해졌습니다.

건강관리수첩을 신청하실 때 공단 지역본부/지도원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www.kosha.or.kr)으로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건강관리수첩제도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 사업안내/신청 > 직업건강 > 건강관리수첩 발급 및 관리

